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서			
 검토내역	신규검토[🗸] 재검토[] 설계변경검토[]		
 현 장 명	신마포나들목신설공사		
대상시설물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합의견	조건부 적정		
검 토 항 목		검토 의견	주요 보완사항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조건부 적정	공사개요서 내용 보완
나. 안전관리조직		조건부 적정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보완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조건부 적정	안전점검 실시시기 등 보완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조건부 적정	지하매설물 현황도면 등 보완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조건부 적정	차량통행계획도면 작성 등 보완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조건부 적정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보완
사. 안전교육계획		조건부 적정	안전교육 실시계획 수립 보완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조건부 적정	내부 비상연락망 등 보완
②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공종)			
가. 가설공사		조건부 적정	가설비계 시공상세도면 등 보완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조건부 적정	흙막이 안전성계산서 등 보완
다. 콘크리트공사		조건부 적정	동바리 시공상세도면 등 보완
라. 강구조물공사		_	해당 없음
마. 성토 및 절토공사		조건부 적정	옹벽 안전성계산서 등 보완
바. 해체공사		_	해당 없음
사. 포장공사		조건부 적정	포장공사 시공상세도면 보완
 □. 기타사항(국토부장관 고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생략			

[첨부]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사항

1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개요

- 1) 건설공사 현장의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건설공사 개요서 작성
 - 공사개요서에 감리자 사항 기입
 - ※「건진법 시행령」의 제9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의 사전 검토·확인을 받은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안전관리 조직

- 1) 안전관리 관계자(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계 첨부
- 대표자의 날인 및 관련서류 미포함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1) 안전점검 실시 시기 보완
 - 아래의 공종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계획 및 종합보고서 작성계획 수정 보완
 - 수문(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2회 + 초기안전점검 1회
 - ※ 위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점검 실시 시기 작성 보완(00년 00월)
 - ※ 수립대상 및 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참고
- 2)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 확인
 -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계획(설치위치, 설치개소, 장비 규격 등)을 도면 표기
 - 촬영자료에 대한 보관계획(자료백업 계획 및 자료보관 방법 등)
 -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
 - ※ 본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항제2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894호, 2016. 1. 12)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 1) 건설현장의 영향범위 내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작성
 - 건설현장의 영향범위 내 지하매설물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하매설물(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 관로 등) 현황도면(굴착 단면도 등) 보완
 - 주요 지하매설물의 위치(깊이, 거리) 및 규격을 명기
 - 필요시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부위의 현황 및 위치를 도면에 명기
 - 다만, 지하매설물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결과 자료 첨부
- 2) 건설현장 인근 지역의 지반침하 방지대책 수립
 -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현장의 지반요건을 고려한 흙막이 벽 공법 또는 차수 공법 선정
 -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 계획 수립
 -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의 흐름을 예상하여 지반에 대한 대책 수립
 - 인접 공사현장 및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에 대한 대책 수립
 - 다짐계획(재료 선정, 다짐층 두께, 상대밀도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 공사 중 현장주변 매설관로의 지반침하 방지하기 위한 중차량 통행계획 추가 필요
 - 기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등
 - ※ 해당현장의 지반침하 방지대책 필요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1) 건설현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및 차량통행계획 도면 작성
 -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 현황
 -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 필요
 -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양방향 유도원 배치계획 모두 첨부)
 -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조치계획 등
- 2)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작성
 -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유도 및 경보장치의 설치계획(규격, 내용 포함)
 -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의 설치계획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재수립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7호) 제47조(건설 공사 안전점검 비용)를 참조하여 안전점검비용 보완
 - ※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안전점검 비용 요율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며, 당 현장의 연면적으로 보간식에 따른 요율 적용 필요
-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집행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 포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 비용
 - ※ 본 공사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95호, 2016. 3. 7)에 따라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사. 안전교육계획

-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계획 수립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포함
 - ※ 해당 현장에 적합한 공종별 교육계획 수립 보완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1) 내부 비상연락망 작성
- 현장 근무자(감리자) 연락처
- 2) 세부공종별 비상대피계획 및 비상대피도 작성
 - 세부공종별 비상대피도는 평면도(지상 및 지하층평면도, 굴착계획도)에 표현하고 필요시 단면도에 표현함
 - ※ 해당현장의 전체적인 비상대비계획 도면 작성 보완

②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가. 가설공사

- 1) 가설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 가설비계의 기둥·띠장·장선재·가재 등의 설치간격 및 벽이음 설치간격 등이 도면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후 수정 보완
 - 비계의 안전성계산서 보완
 - 비계설치 계획과 비계안전성 계산서의 수직재 간격 및 작업하중, 전도방지재 간격 및 가새재가 상이하므로 수정 보완
 -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설계편, 2014. 8)"의 '제5장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편의 구조안전성 검토 절차를 참조하여 검토 실시 필요
 - 비계의 과적치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 구조 검토에 따른 비계의 시공 상세도면 보완

2) 가설울타리

- 가설울타리의 설치 및 해체 순서, 울타리 하단부의 처리, 기초 설치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보완
- 가설울타리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수립 필요
 - 기초 설치 후 지반조건에 따른 채움 및 다짐 대책
 - 주 기둥, 버팀 기둥의 풍하중에 의한 변형방지 대책
 - 울타리 높이에 따른 수평재의 줄 수 및 모서리부의 연결 대책
 - 보호구대와 울타리 틈의 보완 대책 등
- 가설울타리에 대한 안전성 검토 추가
 -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설계편, 2016. 5)"의 '제5장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의 3.3 기타 가시설물 (4)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설계 시 각 부재별 휨, 전단, 변위 및 좌굴 응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 실시

3) 가설장비

- 이동식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치, 반경 등을 도면에 명기하고 반경에 따른 제원표 첨부 및 하중 사항을 명기
- 이동식 크레인 아우트리거 위치의 지반조건에 대한 검토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1) 굴착공사 개요서 내용 보완(굴착 깊이 등)
- 2) 굴착 단계별 시공 순서를 나타낸 시공도면 작성 및 보완
 - 설계기준에 따른 법면기울기, 한계 굴착고 및 소단 폭을 각 굴착 단계별로 작성

- 3) 굴착공사 중 붕괴재해 위험 분석 및 변위측정을 위한 계측계획 보완
 -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 작성
 -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4)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굴착면의 시추주상도 추가 보완
- 5) 흙막이 관련 도면 작성 및 보완
 - 흙막이관련 시공방법 및 순서 등이 표시된 시공상세도 추가
- 6) 흙막이 안전성계산서 작성 보완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1조2에 따른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첨부
- 7) 어스앵커(E/A)의 인장, 인발시험 등 상세 품질계획 보완
- 8) 계측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지침 보완
 - 건물경사계의 경우 한 건물당 복수(2개소 이상)로 설치하여 계측관리
 - 취약구간(우각부, 주변시설물, 차량진출입 경사로 등)에 계측기 추가설치여부 검토
 - 전체계측기는 상호연계하여 경시변화 그래프에 의한 상호관리
 - 계측기기 관리기준, 계측기 망실 시 보완대책 등

다. 콘크리트공사

- 1) 거푸집 · 동바리의 계획도면 및 상세도면 첨부
 - 동바리의 상부 U-헤드, 하부기초, 강관비계 연결·이음 상세도
 - ※『2010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참고
 - ※ 구조 검토서의 개략도는 시공 상세도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치화하여 해당 구조물 도면에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
- 2)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보완
 - 철근작업,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해체 중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계획(고정상태 확인, 근로자 승·하강 설비 확인 포함) 수립

마. 성토 및 절토공사

- 1) 성토 및 절토공사의 시공의 방법 및 순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시공 상세도면 추가
- 2) 옹벽 시공의 방법 및 순서를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 작성 보완

- 3) 옹벽의 붕괴위험요인 분석
 -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작성(표)
- 붕괴위험 요인별 안전대책의 제시
-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4) 옹벽의 안전성계산서 작성

사. 포장공사

1) 포장공사의 시공방법 및 순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의 시공 상세도면 추가

□ 참고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2009)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국토부 고시 2010. 6)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부 고시 2016. 10. 31)
 -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 (국토부 고시, 2016, 5, 23)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국토부 고시 2014. 12)
 - "국가건설기준" (국가건설기준센터 고시 2016. 6. 30)

○ 참고

- 본 안전관리계획서는 수정·편철이 용이하도록 바인더로 관리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계획서에 반영하고, 안전점검은 해당 실시 시기에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중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공종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내의 해 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하는 사유, 재승인 요청계획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본 OO 공정은 협력업체 미선정 등의 사유로 해당 공종의 세부 계획 수립(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계산 서 등)이 곤란하여 착공 전('00. 00. 00. 착공예정)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승인 (재심사) 요청 예정임